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지방검찰청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이영규
전화 051-606-4164

보도자료
2023. 9. 19.(화)

영화 '친구'의 부산 양대 폭력조직 「칠성파-신20세기파」 집단폭력사건 수사결과 - '범죄단체활동죄' 등으로 5명 구속기소 등 총 12명 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□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(부장검사 박성민)은 '21. 10.경 발생한 부산 양대 폭력조직인 칠성파* -신20세기파** 간의 집단폭력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,

- 오늘(9. 19.)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 등으로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

* 칠성파는 '70년대부터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삼아 부산 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부산 거점의 폭력범죄단체로 조직원 약 200명 규모에 이름

** 신20세기파는 '80년대부터 부산 지역 오락실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발전하고, 현재 '반칠성파' 연합을 구축하여 부산 거점의 폭력범죄단체로 조직원 약 100명 규모에 이름

□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부산지역의 토착 폭력조직으로, '80년대부터 현재까지 부산 폭력조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상대조직에 대한 범죄를 반복해 왔음*

* '93. 7. 칠성파 간부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동원하여 신20세기파 간부를 살해(영화 '친구'의 배경이 된 사건)한 이후, '05. 8.~'06. 1. 두 조직원 사이에 상대 조직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, '20. 9.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반복적인 보복범행 발생

- 부산지검은 이와 같은 폭력조직의 집단행동에 대하여, 부산 최대 변화가인 서면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조직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고,
 - 두 조직 관련 접견녹취록을 비롯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, 사건 관계인 약 20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직접수사를 실시하였음
- 그 결과,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, 부산 양대 폭력조직원들이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조직적·집단적 범죄단체 활동임을 밝혀내, 조직원 13명의 범죄단체 활동 범행을 인지하고, 그 중 5명을 직구속하였음
-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을 끝까지 파헤쳐,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의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임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연번	소속조직	피고인	범죄사실 요지	처분
1	칠성파	A (33세, 구속)	'21. 10.경 부산 서면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자,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신20세기파 조직원 4명을 폭행함 [폭처범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, 특수폭행]	'23. 9. 19. 기소
2		B (29세, 구속)		
3		C (38세)		
4		D (28세)		
5		E (31세, 도주 중)		추적 중
6	신20세기파	F (38세, 구속)	위 일시·장소에서 칠성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자,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칠성파 조직원 5명을 폭행하고 치료일수 불상*의 상해를 가함 [폭처범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, 특수상해, 특수폭행]	'23. 9. 19. 기소
7		G (38세, 구속)		
8		H (26세, 구속)		
9		I (28세)		
10		J (32세)		
11		K (27세, 별건 수형 중)		
12		L (26세, 별건 수형 중)		
13	M (28세, 별건 수형 중)	* 폭력조직원들은 범행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불문율		

II

주요 수사 경과

- '22. 6. 부산지검, C, D, I, J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

▶ C, D, I, J는 경찰이 이 사건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송치하였고, '23. 4. 29. 전부 유죄 판결 확정(징역 10월~징역 1년 6월, 일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)

- '22. 11. 2. 부산시경, A 등 12명 불구속 송치

▶ C, D, I, J 포함하여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'범죄단체 가입' 혐의만 추가입건 후 나머지 피의자들과 함께 모두 불구속 송치

- '23. 5.~8. 부산지검, 직접 입건한 피의자 1명 포함, 총 피의자 13명 전면 재조사 및 접견녹취록 확보 등 직접수사

- '23. 9. 6. 부산지검, 조직원 13명 '범죄단체활동죄'로 추가입건

- '23. 9. 12. 부산지검, 조직원 5명(칠성파 2명, 신20세기파 3명) 구속

※ 전체 피의자 13명 중 현재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형 중인 K, L, M, 이미 실형 등이 확정된 C, D, I, J, 구속영장 청구되자 도주한 E 제외한 나머지 5명 전원 구속

- '23. 9. 19. 폭력조직원 12명 일괄 기소

III

수사의 의의

1]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조직 엄단

- 부산은 검찰이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 중 약 15%가 집중되어 있고, 조직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칠성파, 신20세기파가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치안을 훼손함은 물론,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

-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불구속 송치된 이들 조직폭력배들을 구속기소함으로써 폭력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, 조직폭력배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

② 도심 폭력활동에 대해 '범죄단체활동죄' 적용

-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일반 시민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부산 최대의 번화가인 서면 한복판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'90도 인사'를 하거나 버젓이 상대 조직원을 집단구타 하였음
- 공개장소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무고한 시민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, 시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 중대 범죄로서, 피고인들을 폭처법상 '범죄단체활동죄'로 의율*하여 엄히 처벌하였음

* 폭처법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활동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임

③ 부산 지역 토착 폭력 범죄단체 간의 보복 경쟁에 대한 엄벌

<칠성파 - 신20세기파 간 주요 보복 범행>

- ① '93. 7.경 칠성파 간부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동원하여 신20세기파 간부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(영화 '친구'의 배경이 된 사건)
- ② '05. 8.경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, 이에 대한 보복으로 '06. 1.경 신20세기파 조직원 60명이 칠성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
- ③ '10. 12.경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유흥주점 술값 문제로 유흥주점을 관리하던 칠성파 조직원을 폭행하자, 상호 반복적으로 보복 범행을 한 사건
- ④ '11. 6.경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조직원을 폭행하자, 상호 반복적으로 보복 범행을 한 사건
- ⑤ '20. 9.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

-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지역 폭력 범죄단체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상대 조직에 대한 범죄를 반복해 왔음
-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폭력 범죄단체의 집단폭력, 보복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, 구속 수사를 통해 부산 지역 토착 조직폭력 세력에 엄정 대처하였음

IV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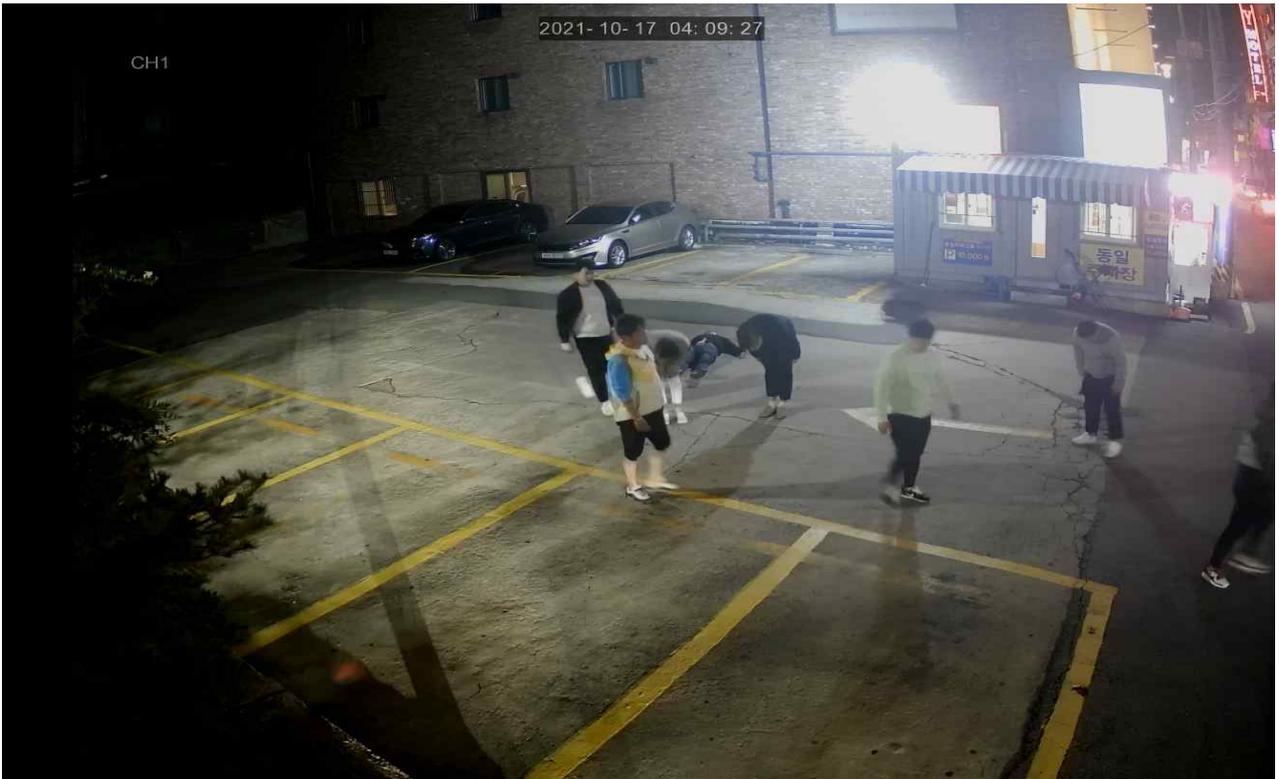
- 검찰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끝까지 파헤쳐,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 세력까지 발본색원함으로써 폭력조직을 해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임 ☑

<첨부자료>

관련 사진



【기절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선배 조직원에게 굴신경례하는 장면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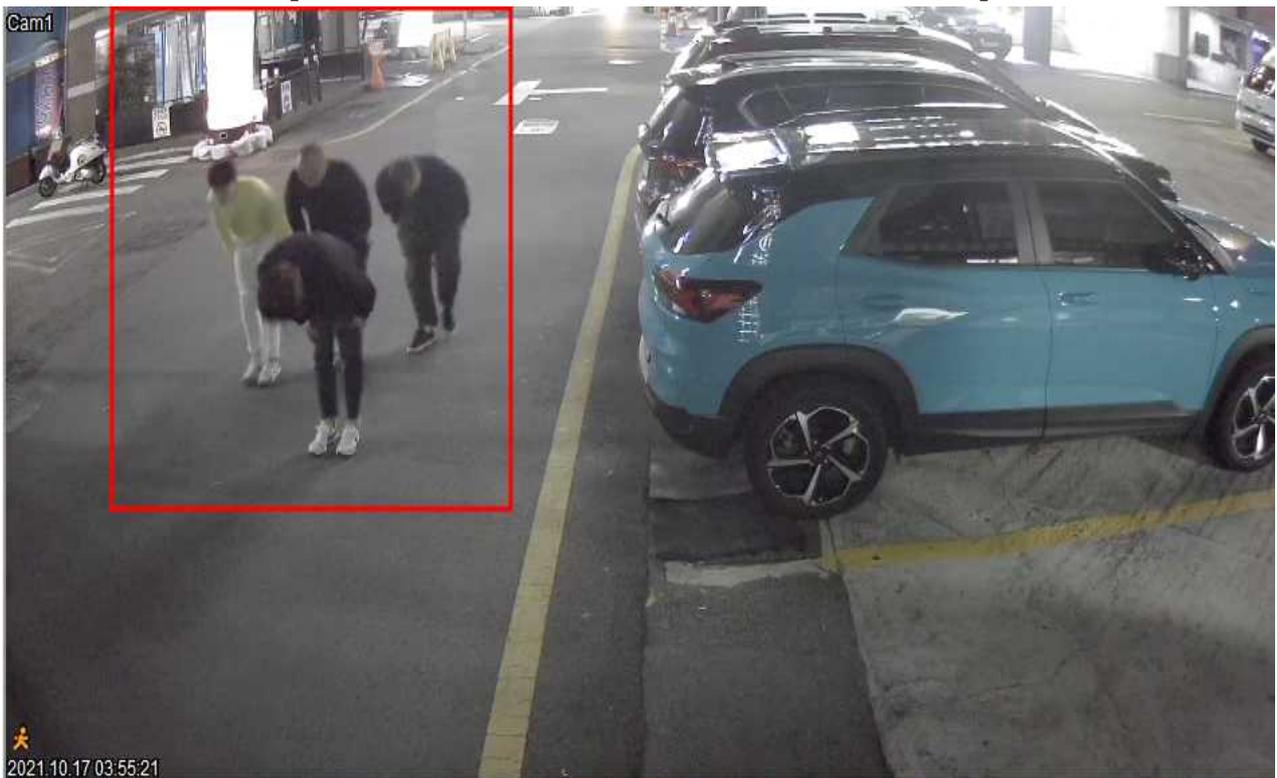


【기절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선배 조직원에게 굴신경례하는 장면】

관련 사진



[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]



[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에게 굴신경례하고 있는 장면]